# 지능정보화 기본법

[시행 2025. 3. 27.] [법률 제20410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정보통신정책총괄과) 044-202-6124, 6119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정보"란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.
- 2. "정보화"란 정보를 생산·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정보통신"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, 이에 관련되는 기기·기술·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.
- 4. "지능정보기술"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.
  - 가.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・추론・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
  - 나. 데이터(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)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·분석·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
  - 다.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·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
  - 라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
  - 마. 무선 또는 유·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
  - 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
- 5. "지능정보화"란 정보의 생산・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・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・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지능정보사회"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・경제, 사회・문화,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.
- 7. "지능정보서비스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  - 가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 하는 것
  - 나.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
  - 다.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
- 8. "정보통신망"이란「전기통신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・가공・저장・검색・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- 9. "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"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・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[이하 "초연결"(超連結)이라 한다]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
- 10. "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"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·설비,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.
- 11. "정보문화"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·가치관·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
- 12. "지능정보사회윤리"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,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・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3. "정보격차"란 사회적・경제적・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, 그와 관련된 기기・소 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.
- 14. "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"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.
- 15. "정보보호"란 정보의 수집・가공・저장・검색・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・변조・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・기술적 수단(이하 "정보보호시스템"이라 한다)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- 16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-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  - 라. 「초・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  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
- 제3조(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·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, 사생활의 자유·비밀을 보장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.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,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.
  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- 제4조(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·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③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전자정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6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·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(이하 "전략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립・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- 2. 공공・민간・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
- 3.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
- 4.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,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,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 업·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
- 5. 정보의 공동활용 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
- 6.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
- 7.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・홍보・인력양성 및 국제협력
- 8.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
- 9. 정보보호, 정보격차 해소,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,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
- 10.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
- 11.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·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·분석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·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  -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.
 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.
  -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"지능정보화책임관"이라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9조(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  -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  -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)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,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1.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「전자정부법」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과 중복되는지 여부
  - 2.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
 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 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·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(이하 "지능정보사회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 -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.
  -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종합계획,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
- 2.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
- 3.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・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
- 4.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・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
- 5.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,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·관리·유통·활용의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- 6. 정보격차의 해소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・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
- 7.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
- 8.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
- 9.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,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
- 10.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・홍보・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,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
- 11.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
- 12.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-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,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-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

- 제13조(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,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·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4조(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)**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보건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환경, 교통, 물류, 과학기술, 재난안전, 치안, 국방,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(이하 "공공지능정보화"라 한다)를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,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,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·도시에 대하여 행정·생활·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(이하 "지역지능정보화"라 한다)를 추진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,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, 재정,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6조(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) 정부는 산업·금융·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, 부가가치 창출,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,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·이용 등 민간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17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**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**제18조(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)** ① 정부는 공공분야의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,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·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**제19조(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)**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「지식재산 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「지식재산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「저작권법」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조정의 접수,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

- 제20조(지능정보기술의 개발)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연구기관등"이라 한다)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(이하 "기술개발"이라 한다)을 하게 할 수 있다.
  - 1. 국 공립 연구기관
  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  -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 - 4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  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  - 6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  - 7.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
  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
  -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,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,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21조(기술기준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・신뢰성・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 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관리·활용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2조(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.
  - 2.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개발
  - 3.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· 강화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23조(전문인력의 양성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・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·장기 수급 전망 수립
  - 2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
  - 3.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
  - 4.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
  - 5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개정 2025. 1. 31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2.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
  -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,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교육공무원등"이라 한다)은 「교육공무원법」제44조제1항,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2항,「지방공무원법」제63조제2항 및「사립학교법」제59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(이하 "지능정보기업"이라 한다)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.
  -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(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교원(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 - 2. 국 · 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
  -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
  - 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
  - 5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
  -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「교육공무원법」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제25조(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)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 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「교육공무원법」제18조제1항 및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26조(기술개발의 실용화·사업화 지원)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(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) 또는 사업화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
  - 2. 기술개발로 생긴「지식재산 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·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
  - 3.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27조(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·유통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·고도화 및 실용화·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・표준 등의 수집・분석・가공
  - 2.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・표준 등의 관리・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구축・운영
  - 3. 지능정보기술 관련 전문가 자문, 기관 간 협업 및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・표준 등의 생산・관리・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제28조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9조(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)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,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)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·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·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31조(규제 개선 등)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·제공·활용할 수 있으며, 정부는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·제공·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·정비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)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(이하 "선도사업"이라 한다)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정부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**제33조(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(이하 "거점지구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1.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・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  - 2.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선도사업의 내용 및 지능정보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
  - 3.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거점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##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

- 제34조(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)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·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·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・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35조(국가지능망의 관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 (이하 "비영리기관등"이라 한다)이 이용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(이하 "국가지능망"이라 한다)을 구축・관리하거 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・관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지능망의 구축・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6조(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・관리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(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・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구축・관리・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・관리・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**제37조(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)** ①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・공동구・전주 등(이하 "관로등"이라 한다)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・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,「방송법」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기간통신사업자등"이라 한다)는 도로, 철도, 지하철도, 상·하수도, 전기설비,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·운용·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(「방송법」제80조에 따른 전송·선로설비를 포함한다)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38조(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)**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.
  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 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0조(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)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 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·관리하는 시설(이하 "데이터센터"라 한다)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 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.
 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・시행과 지원 대상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41조(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) 국가기관등이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・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2조(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)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·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·수집 및 유통·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 - 1.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
  - 2. 데이터의 생산·수집 및 유통·활용
  - 3.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
  - 4. 데이터의 생산 수집 및 유통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
  - 5.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
  - 6.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
  - 7.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
  - 8.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・수집 및 유통・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·수집 및 유통·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표준화법」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43조(데이터의 유통・활용)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・수집・관리와 원활한 유통・활용을 위하여 국가기 관등, 법인,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·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, 법인,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 - 1.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, 문화, 과학기술,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 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
  - 2.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
  - 3. 국가 경제·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
  - 4.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
  -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·수집·유통·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·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

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・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

- 제44조(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)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·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
  - 2.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
  - 3.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
  - 4.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
  - 5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
  - 6.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
  -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
  - 2.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
  - 3.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
  - 4.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
  - 5.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「유아교육법」제13조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 7. 20.>
  -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·운영한다.
- **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**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6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# 한다. <개정 2024. 3. 26.>

- 1. 웹사이트
- 2.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 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
- 3.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, 정보 제공, 상품 주문·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 말기(이하 "무인정보단말기"라 한다)
- 4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・무선 정보통신
-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(이하 "지능정보제품"이라 한다)를 설계, 제작, 가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장애인·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・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・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-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, 검증절차,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46조 삭제 <2025. 1. 21.>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46조

- 제46조의2(장애인·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)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설치·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,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·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26.]

## 제46조의2 삭제 <2025. 1. 21.>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46조의2

제47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·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(이하 "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" 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3. 26.>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5.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
-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,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,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47조 삭제 <2025. 1. 21.>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47조

- **제48조(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)**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.
  - ③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
  - 2.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  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기준·절차·방법·유효기간,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제48조 삭제 <2025. 1. 21.>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48조

- 제49조(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장애인・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・생산하는 사업자
  - 2. 장애인·고령자·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
  - 3.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자
  -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.
  - 1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그 밖에 경제적, 지역적,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 삭제 <2025. 1. 21.>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49조

- **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**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정보격차해소교육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 - 1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- 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 - 4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-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「병역법」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1. 21.]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50조

- 제51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・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2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(이하 "대응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
  - 2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・홍보
  - 3.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53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)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)**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
  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: 연 1회 이상
  - 2.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: 연 1회 이상
  - 3.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: 반기별 1회 이상
  - 4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: 연 1회 이상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: 연 1회 이상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・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,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55조(일자리·노동환경 변화 대응)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·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, 교육,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지능정보사회의 경제적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불평등 해소에 관한 사항
  - 2. 일자리 양극화 등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체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
- 제56조(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·경제·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평가(이하 "사회적 영향평가"라 한다) 할 수 있다. 다만,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.
  - 1.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
  - 2. 정보격차 해소, 사생활 보호,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
  - 3. 고용·노동, 공정거래, 산업 구조, 이용자 권익 등 사회·경제에 미치는 영향
  - 4.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
  - 5.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・경제・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,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·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.

####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

- **제57조(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)**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58조(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,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·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59조(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)**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・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 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·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(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)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, 초연결지 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·구축·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60조(안전성 보호조치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 - 1.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
  - 2.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,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
  - 3.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, 운용·활용기록의 저장·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
  - 4.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(이하 "비상정지"라 한다)과 비상 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
  - 5.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61조(사생활 보호 설계 등)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,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(이하 "사생활등"이라 한다 )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62조(지능정보사회윤리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・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
  - ·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·책무성·통제성·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1.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,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
  - 2.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
  - 3.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
  - 4.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  -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,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·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·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, 평생교육과 언론·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・공급자・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 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
- **제63조(이용자의 권익보호)**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1. 이용자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
  - 2.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· 공정한 구제
  - 3.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
  - 4.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・홍보 및 연구
  - 5.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・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
  - 6.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
 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#### 제7장 보칙

- **제64조(재원의 조달)**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65조(국제협력)**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·지능정보서비스 개발,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·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  - 1.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
  - 2.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
  - 3.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
  - 4.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
  - 5.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
  - 6.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,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
  - 7.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**제66조(지표조사)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·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 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- **제67조(연차보고 등)**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
  - 2. 데이터의 활용 실태
  - 3.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,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7조(연차보고 등)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
  - 2. 데이터의 활용 실태
  - 3. 삭제 < 2025. 1. 21.>
  - 4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,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67조

- **제68조(자료 제출의 요청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
  - 2.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의 지원
  - 3.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
  - 4. 제60조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의 내용과 기준 수립
  - 5.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
  - 6.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 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6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**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
  - 2.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 등의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
  - 3.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
  - 4.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
 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「전자정부법」제 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
  - 2.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
  - 3.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
- 제6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
- 2.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 등의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
- 3.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
- 4. 삭제 < 2025. 1. 21.>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「전자정부법」제 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
- 2.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
- 3.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

[시행일: 2026. 1. 22.] 제69조

- 제70조(과태료) 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, 사업장의 규모, 과태료 부담능력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3. 26.>
  -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4. 3. 26.>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4. 3. 26.>
  - 1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・관리・활용한 자
  - 2.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 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・징수한다.<개정 2024. 3. 26.>

## 제70조(과태료) ① 삭제 <2025. 1. 21.>

-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4. 3. 26.>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4. 3. 26.>
- 1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・관리・활용한 자
- 2. 삭제 < 2025. 1. 21.>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24. 3. 26., 2025. 1. 21.> [시행일: 2026. 1. 22.] 제70조

부칙 <제20731호,2025. 1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